

05

2019-5호



의정정보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5
-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9
-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11
-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15
-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19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24
-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7
-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33
-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37
-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41
-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46
-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54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자동차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의정토론회 60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 서울시의회, 시의원 체험으로 민주주의 배워요! 66
- 부산시의회 방문단, 우호 교류 및 친선을 위한 첫 걸음 68



• 대구시의회, 인구감소시대! 시민공감과 정책이 필요하다	69
• 세종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에 힘 보태	70
• 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 성료	71
• 강원도의회, 환경부의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환영	73
• 전남도의회 임진왜란 연구회, 국보76호 서간첩 총무공 친필 검증 필요하다	74
• 경남도의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개최	75
• 제주시의회, 전기차 보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76

최근 제·개정 법령

• 국민건강보호법	78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9
• 고용정책 기본법	8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81
• 관세법	82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경상남도 남해군「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제15조의2 등 관련 질의	85
• 전라북도 진안군「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등 관련 질의	88
• 세종특별자치시「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여부 질의	91
• 경기도 동두천시「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관련 질의	95

표지 설명

• 충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최	98
-----------------------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

[시행 2019. 4. 29.] [경기도조례 제6125호, 2019. 4. 29., 일부개정]

주요목적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4.29.>
3. "로봇 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봇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 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와 공공기관·연구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실태조사 등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실태조사)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내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4.29.]

제6조(로봇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로봇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대하여 경기도로봇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 센터"라 한다)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경기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진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로봇산업 시장 및 로봇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2.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업무
 3. 로봇산업과 관련한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지원업무
 4. 로봇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로봇산업 관련 장비 구축 및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6. 로봇 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지원업무
 7.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및 로봇전시 업무
 8. 로봇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에서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도지사는 진흥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로봇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용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
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로봇산업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창업자금 용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로봇개발 산업 진흥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로봇산업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봇 기술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봇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노동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10.1.>

1. 경기도의회의원
2. 로봇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로봇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9.4.29.]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19.4.29.]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신설 2019.4.29.]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신설 2019.4.29.]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4.29.]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

3. 퇴직근로자 등 로봇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봇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로봇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로봇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로봇 개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국내 로봇산업 시장 동향 및 수요조사

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지능형 로봇개발 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대전광역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시행 2019. 4. 26.] [대전광역시조례 제5261호, 2019. 4. 26., 제정]

주요목적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클린포그, 에어커튼, 스마트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다. 「대전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 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책무)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도심열섬현상·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

4. 폭염저감조치 체계적 지원 방안

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

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 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 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

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 지도·점검

3.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

4.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3. 선풍기 등 냉방용품

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5. 3.] [전라북도조례 제4644호, 2019. 5. 3., 제정]

주요목적

전라북도의 말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사육·유통·조련·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말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단체”란 말 생산자협회의, 말 영농조합법인, 말 작목반, 대한승마협회 등 말의 생산·조련·이용을 목적으로 하고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말산업 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말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책 개발·시행 등 말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말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북도 말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
4.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말의 질병·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말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북도 말산업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4. 말의 품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말산업 육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과 지역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말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말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과 도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0조(말산업 육성 추진) ① 도지사는 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각급 학교

4.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말산업과 관련된 각급 학교, 말산업에 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말 관련 문화의 창달 등) ① 도지사는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말 관련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말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10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지원 조건 및 용도에 맞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전라남도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2.] [전라남도조례 제4848호, 2019. 5. 2., 일부개정]

주요목적

나무심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광기반을 조성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공유 유휴토지, 농촌마을 빈터, 한계농지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2. “숲 조성 활동”이란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전라남도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으로 가꾸는데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하여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보관·관리하고, 필요 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나무심기단체”란 지역사회에서 나무심기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전라남도 소재의 비영리법인으로 전라남도 및 그 산하기관에 속하지 않은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 5. 2.)
5. “도시림등”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도시림, 같은 조 제5호의 생활림, 같은 조 제6호의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19. 5. 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무심기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기 나무심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생활권 숲 조성과 숲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

④ 도지사는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산하기관 및 기업체 등에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제5조(나무심기 추진협의회의 구성) ①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나무심기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고문 5명,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 5. 2.)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산림·조경·디자인·경관·환경·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사회단체 대표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무심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무심기 활성화를 위한 범 도민 참여
2. 지역에 적합한 수종 선정 및 나무심기에 관한 기술적 지원
3. 나무심기 유형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숲 조성 활동 관련 홍보, 교육 및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5. 산림경관의 보전·관리 활동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도시립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립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시립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립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립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립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립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협력 사업) (신설 2019. 5. 2.) 협의회는 나무심기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1. 생활권·관광지·서남해안 등 경관숲 확대를 위한 나무심기 (신설 2019. 5. 2.)
2. 지역 대표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강화사업 (신설 2019. 5. 2.)
3. 숲 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사업 (신설 2019. 5. 2.)
4. 북한 산림 협력사업의 개발 및 추진 (신설 2019. 5. 2.)
5. 전남의 아름다운 숲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 사업 (신설 2019. 5. 2.)

제16조(참여 확충) 협의회 위원은 나무심기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

제17조(협력 회의) ①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신설 2019. 5. 2.)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5. 2.)

제18조(나무심기단체의 책무) 제15조에 따른 협력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나무심기단체는 협의회와 협업을 통해 숲 조성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2.)

제19조(나무심기 지원) ① 도지사는 민간단체의 나무심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범위 등 구체적 지원기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 (개정 2019. 5. 2.)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제20조(포상) ① 도지사는 숲 조성 활동에 공적이 탁월한 시·군 또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②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5. 2.)



5.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부전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5. 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62호, 2019. 5. 8., 일부개정]

주요목적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대한 도민의 인식 증진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랍사르 습지란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진 곳이나 희귀동식물종의 서식지, 또는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 중 랍사르사무국으로부터 지정받은 습지를 말한다. <개정 2019.5.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 랍사르 습지(이하 “습지”이라 한다)보전 및 관리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5.8.>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랍사르 습지도시 인증 추진 등 습지 보전 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5.8.>

③ 도지사는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
2.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3. 습지의 분포 및 면적
4. 습지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현황에 관한 사항
5.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지질·인문요소 등의 현황에 대한 사항
6.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법
7.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

- 8.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9.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5.8.>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해야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8.>

1. 습지보전과 복원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
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평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습지정비계획에 대한 자문
4. 랍사르습지도시 관리계획 점검 및 변경
5. 그 밖에 습지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2019.5.8.〉[제목개정 2019.5.8.]

제7조(위원회의 구성·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내륙습지와 연안 습지, 랍사르 습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9.5.8.][중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5.8.〉]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9.5.8.][중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5.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5.8.][종전 제9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5.8.>]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 5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종전 제10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5.8.>]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습지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는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5.8.][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5.8.>]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5.8.>]

제13조(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습지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19.5.8.>]

제14조(습지 관리 및 조성) ① 도지사는 습지의 수생식물 번식 확대를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 질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습지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생식물을 제거하는 등 습지의 육지화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5.8.)]

제15조(제주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내 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주습지센터(이하 “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천계획의 습지조사
2. 습지보호지역 및 랍사르 습지 모니터링
3. 습지보호지역 지정건의 및 검토지원
4. 습지생태계 자료 및 교육·홍보자료 제작·보급
5. 그 밖에 습지보전을 위한 정책 및 연구·조사사업

③ 도지사는 습지센터의 전문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환경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8.]

제16조(랍사르습지도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랍사르 협약에서 인증 받은 랍사르 습지도시(마을)의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랍사르 습지도시 운영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8.]

제17조(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과 랍사르습지도시 주민에 대하여 습지보전 역량강화 및 친환경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8.>

[제9조에서 이동 (2019.5.8.)]

제18조(습지보전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5.8.)]

제19조(교육·홍보·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습지보전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습지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사업계획단계부터 정보공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5.8.)]

제20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습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5.8.)]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22.]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179호, 2019. 4. 22., 일부개정]

▶ 주요목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

▶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
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사항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
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

제6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희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목에 따라 정비한다.

- 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 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

4. 보행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8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

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제9조(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 1. 보도 2. 보행자 전용도로 3. 횡단보도 4. 지하보도 5. 육교 6. 그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0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 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부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친환경 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5. 2.]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 제1475호, 2019. 5. 2., 제정]

주요목적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제33조,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3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지속 가능한 상생적 균형발전에 이바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교류란 도시와 농어촌간(이하 "도농간"이라 한다) 상호 발전을 위해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수축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등의 상품, 체험, 문화·관광 서비스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 인증을 받은 식품
 -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산물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농어촌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5.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농어촌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및 확대방안
4.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방안
5. 도농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6.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생산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7. 도농상생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대상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급식 지원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급의 경우 공공급식센터를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관의 명칭, 대상기관장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기관의 급식인원수 및 급식일수
3. 공공급식센터의 우수식재료 사용 시 소용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4. 그 밖에 공공급식을 위한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해당 지원금의 지급일 전날까지 공공급식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급식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급식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수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 2.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의 장
 - 3.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에서 추천하는 사람
 - 4. 급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5. 학부모 등 공공급식시설 이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6. 식재료 유통 및 조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7. 영양사 및 조리사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8. 그 밖에 급식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수산물 생산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직거래 활성화 및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업무

③ 구청장은 급식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공공급식센터의 장 :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 공공급식에 관한 물류·유통, 교육·홍보 지원, 재무관리 등 공공급식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 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3. 울산광역시동구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5. 8.] [울산광역시동구조례 제928호, 2019. 5. 8., 일부개정]

주요목적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4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에 고시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의 내용)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05.08.>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

-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지정) ① 제4조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 지정은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한 경우
4.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 관리·운영자는 사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만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0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05.08.>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05.08.>

제11조(설치) 법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울산해양경찰서장 <개정 2017.10.26.>
3. 울산기상대장
4. 울산동부경찰서장
5. 울산동부소방서장
6. 울산광역시동구보건소장
7.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구의원
8.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9.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제시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8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 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수욕장운영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9.05.08.>

제19조(준용)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5.08.>



4. 고양시 시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 1.] [경기도고양시조례 제2069호, 2019. 4. 30., 제정]

주요목적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경제·사회·환경·복지·교육 등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4. “행복 격차”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의 시행 결과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나타난 행복 수준의 차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는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한다.

- ② 시는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시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③ 시는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은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을 유지하되, 지역 간의 격차 해소와 더불어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지향한다.
- ④ 시는 시민과 상호 신뢰 및 협력을 통해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
6.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
7.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행복지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 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지수 측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 행복 증진과 관련한 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9조(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행복지수 측정 결과 및 반영 현황,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활동 등 종합추진결과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
5. 행복 격차 해소방안
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기획조정실장, 도시교통정책실장, 복지여성국장 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민, 학계 전문가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위원의 해촉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해당 심의·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의 협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공동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행복 증진 교육) 시장은 시민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시장은 제8조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지수 측정, 제19조 행복 증진 교육의 효율적·전문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음성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 2019. 5. 7.] [충청북도음성군조례 제2499호, 2019. 5. 7., 일부개정]

주요목적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에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음성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 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4. "서포터즈"란 관내에 거주하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②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공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설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현
4. 가족친화환경 조성
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군수는 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군수는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임산부·노인·아동 등 보행 편의



- 2. 대중교통의 안전성
-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 4.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안전성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 2.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주거단지) 군수는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
-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공간 마련

제14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에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군수는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개인의 역량증진과 가족·마을·행정의 협력체계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읍성군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 개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부군수로 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장, 과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친화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전문개정 2019.5.7.]

제23조의2(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본조 신설 2019.5.7.]

제2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군수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5.7.]

제23조의4(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5.7.]

제23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9.5.7.]

제24조 (여성친화도시조성서포터즈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음성군 여성친화도시조성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서포터즈의 구성) ① 서포터즈는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26조(서포터즈의 기능)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확산 및 공감대형성과 홍보
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7조(위촉기간) 서포터즈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8조(위촉 해제) 군수는 서포터즈가 사망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활동지원) 군수는 참여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4. 23.] [강원도횡성군조례 제2417호, 2019. 4. 23., 제정]

주요목적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횡성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보육·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스스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 잠재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5. 아동이 폭력·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2. 아동친화도시의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4.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5. 아동 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접근성 및 안전성 등 검토
2.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이용 공간 확보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수용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건강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질병·감염병 예방 및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모든 군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군수는 아동이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 ① 군수는 아동정책에 대한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정책 업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아동친화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부서의견 조정
2. 아동의견 검토 및 추진상황 보고
3.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제안사항 및 정책발굴사항 검토
4. 그 밖에 아동정책 등 제도발전·개선방안 제시

⑤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아동참여기구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부서장, 행정경찰서 담당 부서장, 행정교육청 담당 부서장, 행정소방서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황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아동관련 기관·단체 대표
3. 황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부모 대표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하며, 추진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황성군 아동참여 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위원 교육, 홍보활동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아동의 관점에서 군정참여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모니터링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주민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정책 제안
3.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2.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② 아동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학교장 추천을 병행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제24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아동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해당정책 등의 개선방향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④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아동의 나이, 성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아동영향평가의 시기, 방법 등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및 권리침해 사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대하여 아동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아동권리침해구제) ① 군수는 아동권리 옹호 및 권리침해 등에 대한 진정 및 중재를 위해 3명 이내에 아동권리 옹호관(이하 "옹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



할 수 있다.

② 읍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2. 아동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4.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의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읍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그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아동권리 보호·증진 및 상담·컨설팅
2. 아동영향평가 등에 대한 모니터링
3. 행정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아동권리 옹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읍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읍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읍부즈퍼슨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읍부즈퍼슨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읍부즈퍼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읍부즈퍼슨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읍부즈퍼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4. 26.]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554호, 2019. 4. 26., 일부개정]

주요목적

영광군에서 설치한 영광군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캠핑장의 체계적·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제2조(위치) 영광군 국민여가캠핑장의 위치는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806-1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캠핑장”이란 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과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4. “캠핑카”란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5.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6. “캠핑카사이트”란 캠핑카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7.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8. “운동장”이란 캠핑장내 축구장 및 족구장을 말한다.
9. “다목적실”이란 캠핑장내 다목적 강당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0. “사용”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1.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2.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과 공휴일 전날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13.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과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9. 4. 26.>

1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개정 2019. 4. 26.>

15. “관료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 4. 26.>

제4조(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신청 다음날 18:00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예약할 경우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된 시한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설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기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대상인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군 직영관리의 경우)

나.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군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

라. 제3조제8호의 운동장을 군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아.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차.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 사용권으로 납부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균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한다.

제9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선납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에 사용 제한 사유를 알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캠핑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 등을 휴대한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사용자는 별표 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캠핑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캠핑장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편의 제공
4.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홍보

5. 그 밖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위탁 관리·운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8조(보험 가입) ①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명피해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군에서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충남 자동차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위한 의정토론회

〈'19. 4. 30.(화), 16:00~17:30/ 온양관광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자동차산업 발전 로드맵 수립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참가자 대부분은 미래차 시장의 급팽창으로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내 자동차 산업의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여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과 신시장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며,
 - 어려움에 처한 국내 자동차산업의 극복방안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한 전문인력 확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서 등에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2인)

《정도현 자동차부품연구원 융합시스템연구본부장》

- 국내 자동차 산업은 2015년 기준 4500여개의 부품업체로 이루어진 시스템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내 비중, 고용 규모, 세계적 위상 등의 자료를 통해 중요한 성장 동력 산업임을 설명함.
- 국내 완성차 생산량의 감소와 영업 이익률 하락, 적자 기업 증가를 보이며 내수와 수출하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원인으로 완성차에 대한 높은 의존성과 부품기업규모의 영세성 및 매출액 대비 미래차에 대한 투자 부족 등으로 지적함.
- 자동차 산업에 대한 세계적 동향은 CASE(연결성, 자율주행, 공유 서비스, 전기동력)로 표현되는 기술을 배경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기존의 자동차 및 연관 기업이 아닌 새로운 기업(테슬라, 구글, 우버, 모빌아이 등)이 자동차 산업에 진입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과의 협업이 미래 자동차 시장 진입의 관건으로 등장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부품 기업의 대형화(1조 이상 매출 기업), 친환경차 생산 비중 10%이상, 국내 생산 규모 400만대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소개함.
-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전략으로 부품 설계 및 개발 능력의 강화, 생산 및 제조 경쟁력 확보, 글로벌화를 위한 노력, 신시장 대응 능력 확보 등을 제시함.

《이태경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장》

-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연관 서비스 시장도 급성장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은 미래차 시장의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함.

- 국내 자동차산업은 중국과 인도의 신흥경쟁국 등장과 불확실한 통상환경 등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했으며, 미래차 전반의 탄탄한 제조기반의 강점을 살린 앞으로 3~4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충남의 경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미래형 자동차 시장 확대의 대응으로 저성장 기조의 극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스마트카와 그린카에 필요한 5대 핵심(친환경, 초연결, 고안전, 고편의, 고감성)융복합 기술 기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의 미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정부정책 및 충남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제안함.
 - 부품업체의 지속적인 판매부진, 경영 악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혁신 방안으로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 신규판로개척 및 업종전환 지원 위한 세계화지원센터 구축

2 종합토론(3인)

① 김계원 (전문대학교 기계ICT융합공학부 교수)

- 국내 자동차 산업의 특징으로 수출시장에서 낮은 차량가격에 대비하여 급여액의 비중이 경쟁국에 비해 높고, 협력기업의 낮은 임금 문제 등 저생산성과 고비용을 언급하며, 경직된 노동 구조를 경쟁력 약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하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함.
- 2018년 산업연구원의 발표에 근거하여, 한국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개선 사항으로 전속거래의 수직적 하청 구조 탈피, 연구개발이 불가능한 부품 제조사의 낮은 영업 이익률, 자동차부품사의 낮은 해외진출 상황을 지적하며, R&D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 정책을 통해 기술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주장함.
-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 디지털 변혁을 통한 산업생태계와 제조 환경의 개선, 생산과 거래의 표준화와 모듈화, 노사관계의 재확립, 고비용 저생산 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강조함.



② **황영일 ((주)비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 니켈 소재를 바탕으로 전류센서를 개발하는 주력 사업을 소개하며, 중국 공장의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자동화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품질 시스템 강화 및 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R&D 추진을 위한 인력충원과 품질지식 및 자동화 시스템 운영 교육에 대한 지원 및 자금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를 강조함.

③ **이원희(충청남도 산업육성과장)**

- 충남 부품기업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국내 완성차 업체의 내수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 어려움의 해소와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차산업 육성 추진상황을 설명함.
- 세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소차·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계획과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추진 내역 등을 소개하며 산업부의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과 연계하여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향후 계획을 설명함.

③ **자유토론(질의답변)**

- 산·학·연·관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의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TF팀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함.

[질의 : CTI KOREA 채현병 대표]

- ⇒ 국내 처음으로 충남에서 2018년 10월 모니터링을 위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세계화지원사업을 위한 추경 등이 가능했으며,
- 2005년 기술교류를 위한 자동차산업육성추진단을 발족하였으나 2012년 이후 네트워크 진행 동력이 소실된 상태로
 - 금년 11월 예정하고 있는 미래차융합얼라이언스 포럼을 통해 기술교류와 R&D 인력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답변 :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이태경 센터장]

-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미래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자동차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포럼을 제안하며,
 -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충남의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 또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청남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발안: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현 부위원장]

III 토론회 도출과제 및 결과

<도출과제>

- 자동차산업 저성장 극복 방안 마련
- 내수와 수출부진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해소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프로그램 필요

<결 과>

-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및 미래형 자동차 시장 확대의 대응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인프라 구축 방안 마련
-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부품 설계 및 개발 능력의 강화, 생산 및 제조 경쟁력 확보, 글로벌화, 신시장 대응 능력 확보를 위한 인력·자금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충남의 자동차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산·학·연·관 포럼의 추진으로 기술교류와 전문인력 확충 등 기술역량 제고 방안 마련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시의원 체험으로 민주주의 배우요

- 서울시의회, 초·중·고교생 대상 「2019년 청소년 의회교실」 총 13회 운영
- 찬반토론, 표결 등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 체험, 지방의회 이해 도모
- 도전! 골든벨, 발안회 확대 등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강화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오는 5월 9일부터 의회 본회의장에서 총 13회에 걸쳐 관내 초·중·고교생 1,30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한다.

- 초등학교 의회교실은 서울특별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총 11회, 중·고교생 의회 교실은 사전 수요조사 후 신청 중·고등학교 대상 2회(회당 1개교) 운영

2019년 청소년 의회교실 시작 첫날인 5월 9일(목)에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동대문구·중랑구) 소속 초등학교 5~6학년생 약 100명이 참여하여 1일 시의원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학생들은 자신만만 스피치 대회를 통해 직접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청소년 관련 이슈를 안건으로 채택하여 찬성·반대 토론, 전자표결처리 등 모의의회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종이 없는 첨단 디지털 전자회의와 전자투표를 경험하게 되며, 실제 의회와 동일한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한다.

특히, 지난해 현장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올해는 재미와 학습효과 모두를 만족시키는 의회 퀴즈 프로그램인 ‘도전! 골든벨’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는 ‘2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2019년 청소년 의회교실의 주요 내용은 ▲ 입교식(청소년의원 선서), ▲ 시의회소개 및 홍보영상물 상영(의회 구성·현황 소개,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소개 영상), ▲ 모의의회(조례안 처리), ▲ 참여형 프로그램(자신만만 스피치, 도전! 골든벨, 2분 자유발언), ▲ 수료식(시의원 격려말씀, 수료증 수여, 기념 사진 촬영) 등이며, 초등학생 의회교실은 6시간, 중·고등학생 의회교실은 3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직접 의회를 체험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의회교실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하고 내실있는 운영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의회

부산시의회 방문단 우호 교류 및 친선을 위한 첫 걸음

- 부산시의회 대표단 4. 24 ~ 26, 2박3일 일정으로 상해시 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 방문
- 상해시 인민대표회 상임위원회 부주임 접견, 칭푸구 인민대표대회, 쉬웨이구 인민대표대회 방문 등 양도시의 오랜 친선을 확인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부산시의회는 박인영 의장을 단장으로 대표단 13명이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한다고 전했다.

부산시의회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는 1997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양도시 간 교차 방문을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및 정책을 교류하는 등 오랜 시간 변함없는 친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박인영 의장의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이다.

방문단은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상해시 산하 칭포구, 쉬웨이구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정보 공유는 물론,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상하이 영화박물관, 상하이엑스포 기념관 등 관련 시설들을 둘러보며 부산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여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방문단 의원들의 뜻을 모아 작은 기부금의 마음도 전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인구감소시대 시민공감 정책이 필요하다

- 대구시의회 인구정책 토론회 개최
- 시민이 공감하는 분야별 인구정책의 필요성 대두

「시민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슬로건으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8대 대구광역시의회는 인구감소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3일(금) 오후 2시 대구시청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게 된 우리 사회 각 분야별 정책적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자리로 원론적인 토론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의 형식을 벗어나 문화와 소통중심의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곤 영남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출산을 감소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미혼율과 초혼연령을 내리기 위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위한 컨트롤타워, △선택과 집중 및 중장기 인구정책,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인구기초조사 실시의 4가지 실천안을 제시하고, 이어 정영숙 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책분야별 8명의 패널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대구인구가 5년 연속 감소하고, 감소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등 인구감소가 도시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대구시뿐만 아니라 국가인구정책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에 힘 보태

- 서금택 의장 “이재민들의 상처 하루빨리 치유되길 염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는 26일 의장실에서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과 함께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물품(수건 120여장)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을 비롯해 안찬영·이영세 제1.2부의장과 박성수·노종용·손인수 의원, 세종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영섭 지회장이 참석했다.

서 의장은 전달식에서 “옛 부터 우리 한민족은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서로 상부상조하여 극복해온 저력이 있다”면서 “산불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이재민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일상생활로 복귀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장은 지난 10일에도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장들과 함께 강원도의회를 방문해 산불 피해복구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이재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세종시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 성료

- 도민과 함께 한 참여하는 정책대화로 정책의제의 구체화 및 실천 전망 -

“2019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지난 4월 30일 성료 되었다. 4월 8일부터 23일간 총 30회의 토론회로 구성된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였다. 30회의 토론회는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서 16회, 시군 지역에서 14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도민을 지향한 참여형 릴레이 토론회로 도민,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한 정책대화의 장이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정책토론 대축제는 지난해 제10대 의회에서 시범 추진한 사업을 2019년도는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며 함께 추진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민선7기 협치의 성과이며, 이는 오로지 도민을 지향하는 경기도정의 철학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 했다.

30회의 토론회에 올려진 정책주제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민생현안과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한 현안이슈들로 교육정책 6건, 복지정책 5건, 미세먼지 등 환경정책 분야 4건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외에 지역개발 3건, 농업정책 2건, 보건의료 2건, 경제정책 2건, 지방자치 2건, 주택·보육·체육·언론협력 등이 각 1건 씩으로 구성되었다.

본 정책토론 대축제를 주관한 소통협치국 서남권 국장은 “이번 정책토론 대축제에 참여한 지정토론자 및 발제자 등 토론참여자들은 총 194명으로 이중 37명이 경기도 의원이고, 실국장급 간부공무원 3명 등 도청공무원 14명, 경기연구원 및 도 공공기관 17명, 시군 공무원 및 시군 공공기관 11명, 도교육청 장학자 및 장학관 등 10명이 참여하였고, 대학교수 21명, 언론인 7명 등 공공 및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정책토론 축제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직접민주주의 강화의 도정목표와 부합하게 시민사회단체 48명과 일반도민 13명이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자평하였다.

한편, 2019 경기도 춘계 정책토론 대축제에는 2,200여명에 달하는 방청객들이 방청에 참여하여 열띤 관심과 의견개진을 펼쳤다.

지역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도민들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토론하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만족스러웠다는 평이 있기도 했고, 홍보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 토론자 참여기회를 확대해야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더욱 신중하게 도민을 위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오는 9월 예정된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적 개최 협력기문

강원도의회는 5월 1일 광역시의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집)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과 참여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광주수영대회)는 오는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열리며, 이후 8월 5일부터 18까지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마스터스 대회가 치러질 예정으로,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과 8월에 개최되는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분위기 조성(분업) 및 입장권 구매 협조 등을 약속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강원도의회 원태경 운영위원장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매머드 스포츠 이벤트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강원도의회에서도 전광판 등을 활용한 대회 홍보 및 입장권 구매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임진왜란 연구회, 국보76호 서간첩 충무공 친필 검증 필요하다!

- 객관적 검증으로 충무공 정신 바로 세워야 -

전라남도의회 임진왜란 연구회(대표 임종기 의원)는 지난 3월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현지 활동에서 아산현충사에 보관중인 국보 76호 서간첩과 이충무공전서(1960년 이은상 저) 간 서로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순신장군 친필확인을 위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충무공전서에는 서한 6편과 잡문 3편, 1593년 7월 16일자 편지 추신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서간첩에는 서한 8편은 있지만 잡문 3편은 없고, 편지 추신도 없다.

또한, 이충무공전서에는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국’자가 한자 서식에 맞추어 상단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간첩에는 ‘국’자가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 글씨체도 옥편에 등재된 초서체가 아니라고 했다.

서간첩의 첫 번째 장에 수록된 이순신장군이 조카에게 보낸 편지는 종이질감이 갈대 잎처럼 거칠었으나, 세 번째 장에 수록된 약무호남 시무국가라는 문구가 쓰여진 1593년 7월 16일자 편지의 종이는 두껍고, 표면이 균일하고 질감이 매끄러워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지적했다.

연구회는 “차이점이 발견된 이상 서간첩의 종이의 질이 400년 전의 종이 인지 확인하는 등 보다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문화재청장에 이에 대한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했고, 앞으로도 충무공친필검증을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개최

경상남도의회는 29일(월) 3.15의거 및 4.19혁명 유공자를 위문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날 김지수 의장, 이옥선 기획행정위원장 그리고 안주생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등은 창원시에 거주하는 4.19혁명 유공자 김남영씨, 3.15의거 유공자 윤철원씨 댁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를 부착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현재 4.19민주혁명회 경남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남영 유공자는 중학교 재학 당시 4.19혁명에 참여하여 관통상을 입었으며, 윤철원 유공자는 3.15의거에 참여하여 치명상을 입는 등 우리나라 민주화에 앞장선 공로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김지수 의장은 “마산에서 일어난 3.15의거는 우리나라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운동이며, 이를 도화선으로 촉발된 4.19혁명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큰 이정표가 되었다.” 면서 “그 당시 우리 경남 도민들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 시키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기차 보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자동차 전문정비업 중심으로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와 (사)제주교통연구소(소장 송규진)는 5월 7일(화) 오후 2시부터 “전기차 보급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된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조항웅 (사)제주교통연구소 이사가 “전기차 보급에 따른 피해 산업 현황 및 대응방안 모색”에 대해 주제 발표하고

이후에는 송규진 (사)제주교통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신명식 한국교통공단 전문위원, 고성훈 제주특별자치도 전문정비조합 부이사장,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도 좌정규 교통정책과장, 문경삼 저탄소정책과장 등이 참석해서 토론회를 갖게 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표방,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에 따른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기차가 2023년 14만7천여 대로 보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제·개정 법령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1. 국민건강보호법

[시행 2019. 4. 23.] [법을 제16366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저소득 체납자가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 등을 완화하고, 계좌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납보험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적사항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기준을 조정하고, 가입자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보다 강하게 제재하기 위하여 처벌 수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제75조제2항제2호).
- 나. 종전에는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던 것을, 앞으로는 5회 이상 또는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 해당 분할 납부 횟수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제82조제3항).
- 다. 종전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한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제1항).
-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이 가입자 등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외의 정보를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5조).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 2019. 4. 25., 제정]

■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주요 기준을 정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2)

식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려는 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글루텐 함유 등에 관한 사항 또는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

나. 식품 등의 표시방법(안 제5조제2항 및 별표 3)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려는 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 단위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고,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함.

다.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절차(안 제12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하려면 표시·광고에 관한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및 운영 기준, 심의 대상 및 심의 기준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19. 4. 30.] [법률 제16412호, 2018. 4.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효율화 및 중복 방지를 위한 절차 등을 개선하는 한편, 고용서비스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고용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고용정보 시스템의 관리·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고용에 미치는 영향,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3조제2항 신설).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음(제13조의2제6항 및 제7항 신설).
-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보주체가 동의하는 경우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구인·구직 지원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고용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고용정보시스템이 수집·관리하는 정보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제15조의4 신설).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9. 5. 7.] [대통령령 제29731호, 2019. 5.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등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이 시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조정하고,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신체장애에 대해 남녀를 구분하여 다르게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 및 보험금액의 차별을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조정(제5조)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험 관련 업무를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수행하게 되어 안전검사기관이 시험기관의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받기만 하면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 시기 보완(제13조제3항 신설)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는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개시와 관계없이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등의 이용금지 조치 등을 하면 인도받은 날부터 미사용 기간이 30일을 넘는 경우에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기 전까지만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면 되도록 함.

다. 같은 신체장애에 대한 남녀 간 장애등급 및 보험금액의 차별 폐지(별표 7 제3호)

종전에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자의 장애등급과 보험금액은 7급과 3천200만원 이상으로, 남자의 장애등급과 보험금액은 12급과 1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남녀의 구분 없이 장애등급과 보험금액을 7급과 3천200만원 이상으로 같게 규정함으로써 차별을 없앴.

5. 관세법

[시행 2019. 5. 1.] [법률 제16093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에 대한 재심사 대상의 확대(제37조 제1항 및 제3항)

- 1)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거래가격 산정 시 가감(加減)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로 한정하던 것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 2) 기존에는 재심사가 인정되지 아니하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대상을 확대함.



나.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제37조의4제4항, 제37조의4제5항 신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세관장이 요청한 과세가격결정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보는 결정방법이 아닌 다른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협의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함.

다. 체납된 관세에 대한 증가산금의 이율 인하(제41조제2항 전단)

은행의 연체금리 인하 등을 고려하여 체납된 관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매일 부과하는 증가산금의 이율을 1천분의 12에서 1만분의 75로 인하함.

라.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 신설(제43조의2 신설)

관세의 체납자 대부분이 무역거래를 통하여 체납액을 납부하는 무역업자인 점을 고려하여, 분납계획에 따른 체납액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당 사유가 있다면 체납처분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세 체납자의 특성을 고려한 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둠.

마.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 조정(제50조제2항제1호·제3호, 제69조제2호 및 제70조 제1항)

사회적 가치 보호 강화를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예외 사유로 규정된 공중도덕·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정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추가하고 해당 조정관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용순위를 1순위로 규정함.

바.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 관세 면제 기한 연장함(제89조).

사. 개항시설의 개선명령 신설(제133조제3항 신설)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아.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정비(제175조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신설)

다수의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는 자는 하나의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 모든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특허취소로 인한 결격사유는 해당 특허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정비.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http://council.chungnam.go.kr>

충청남도의회

입법에산정책담당관실

충청남도의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5조의2 등 관련)

[의견 19-0146, 2019. 4. 25., 경상남도 남해군]

【질의요지】

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수 있는지?

나. (질의 가와 같은 내부위임이 가능하다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남해군수의 권한을 남해군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한다는 내용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러나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대외적인 권한 이전 없이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 내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내부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법제처 2012. 12. 7. 의견제시 12-0405, 법제처 2013. 12. 27. 의견제시 13-039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이하 “행정효율 촉진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군(軍)의 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함)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 하면서, 같은 규정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18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 기관인 읍과 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서 각각 읍장과 면장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그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호)에서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하부행정기관 등에 내부위임 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읍· 면장에게 내부위임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 어느 권한까지를 읍· 면장에게 내부위임 할 것인지는 업무효율 증대의 필요성과 하부행정기관인 읍· 면장이 해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의 적절성 등을 비교형량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 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등 참조), 이상과 같은 점들을 내부위임 및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권한의 위임은 내부위임이 아니라 외부적 권한 위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5428 판결, 대법원 1977. 4. 12. 선고 77누4 판결 등 참조).

한편,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효율촉진규정 제2조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10조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하는 경우에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을 비롯한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내부위임하는 경우의 규정형식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 등에 내부위임을 하려는 경우 그 형식은 행정효율촉진규정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훈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해군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8까지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남해군수의 권한을 남해군 읍·면장에게 내부위임 하기 위해서는 훈령 또는 규칙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의 경우 「남해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제1항에서 사무별 전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 사무에 관한 전결 사항 역시 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남해군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기 위해서 같은 규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 원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같은 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질의요지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두는 방식으로 내부위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등 관련)

[의견 19-0135, 2019. 5. 3., 전라북도 진안군]

【질의요지】

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진안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공유재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외에, 모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배분 원리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 참조), 나아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유재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므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도 공유재산의 관리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가 그 행위의 성질 등에 있어 그 취득이나 처분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방의회가 사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이라고 볼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규정하면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재산의 “관리” 행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고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관하여 조례로써 별도로 정할 것을 용인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 참조).

그렇다면, 공유재산법 제1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공유재산 관리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이와 같은 사무에 대해 일정 부분 지방의회가 관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1건당 기준가격이 취득의 경우 20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재산 등을 중요 재산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진안군에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해서도 조례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진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안과 같이 진안군수가 하려는 모든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에 대하여 진안군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서 진안군수에게 부여한 사무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의견 19-0142, 2019. 4. 18., 세종특별자치시]

【질의요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가.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나.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자치회에 표결권이 없는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다.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시 사전 교육 이수 등 자격 요건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질의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세종시조례안”이라 함)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지방분권법 제2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제도로서(의안번호 9385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원문 참조), 읍·면·동별로 해당 행정구역 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기구이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같은 법 제29조제2항),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의에서 표결권을 갖고,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주민자치회장이 호선되는바(세종시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의 성격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치적으로 자치구역의 주민을 대표하면서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하여

우선, 지방분권법 제29조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주체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에서는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구성·운영·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로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법제처 2015. 10. 20. 의견제시 15-0285 참고).

다음으로, 세종시조례안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두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당연직이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 등으로 선임되는 제도로서,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의견 등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규정하는 것입니다(법제처 2018. 5. 16. 의견제시 18-0092 등 참고).

그런데, 세종시조례안 제7조제3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은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할 경우, 앞서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세종시조례안 제7조제3항의 문언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신이 선출된 지역선거구에 해당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등의 의미로 본다면, 이와 같이 주민자치회의 당연직 고문이 지방의회 의원의 주소지나 지역선거구에 따라 결정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특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당연직 제도의 성격 및 읍·면·동을 단위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분권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그 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정할 경우 이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주민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시 자격 요건을 세종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특정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의 내용, 교육 이수 시간, 교육 이수 시 개인의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사전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세종시조례안에 규정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려는 주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실상 그 참여를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동두천시장의 금고 지정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침해 여부와 동두천시장과 금고 은행 간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등

[의견 19-0136, 2019. 5. 9., 경기도 동두천시]

【질의요지】

동두천시장이 금고약정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면서, 금고약정 갱신사항 결정에 관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6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5호, 이하 “금고지정기준”이라 함) 1. [5]에서는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서 금고의 약정기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인바,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동두천시조례안”이라 함) 제6조 중 금고와의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부분은 위 금고지정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로서 동두천시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참조). 그러나 동두천시조례안 제6조와 제11조제4호 중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도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매 1년마다 금고의 약정 갱신 2개월 전에 시중금리를 고려하여 금리조정 후 금고의 약정 갱신사항 결정”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의 경우,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만약 동두천시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여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율 등을 매년 최초 약정과 달리 정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약정의 갱신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동두천 시장이 기존 약정을 해지(解止)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이 아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48조제3항, 금고지정기준 1. [2] ⑥ 등에 따를 때 금고약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융기관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금고업무 취급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이므로, 지방계약법 제2조 및 제4조 등에 의할 때 금고약정은 원칙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5. 7. 22. 회신 15-0425 해석례 등 참조), 조례의 규정 역시 지방 계약법 등의 규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14장제7절 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한 사정없이 약정기간의 만료 전에 금고약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고지정기준 5.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의 “특별한 사유” 역시 지방계약법에 반하는 범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두천시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내 약정갱신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동두천시장이 기존 약정을 해지(解止)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위배된다고 평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안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두천시조례안이 시행되는 당시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에 대해서도 같은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내 약정갱신에 응하지 않는 경우 동두천시장이 기존 약정을 해지(解止)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기존에 체결



되어 있는 금고약정과 관련해서도 같은 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에 앞서 살펴본 지방계약법 위배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약 동두천시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되 매 1년 마다 이율 등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약정에 포함시켜 그와 같이 금고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1년 마다 갱신할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위와 같은 규정이 동두천시장의 금고지정 사무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조례안에서는 갱신의 대상을 “이율 등 약정조건(제6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금고의 약정 갱신사항 결정(제11항제4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통하여 동두천시장의 금고약정 체결 사무에 관여하고자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같은 조례안 제13조제6항에서는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 60일 전 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금고 지정이 아닌 금고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동두천시장이 구속되는지 또한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조례안의 규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동두천시장의 금고지정 사무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동두천시조례안 제6조 및 제11조제4호가 동두천시장으로 하여금 같은 규정 내용을 포함시켜 금고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약정 갱신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면, 금고약정에 반영되도록 하려는 조례안의 내용이 동두천시장의 금고지정 사무 집행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지, 또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권 등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고지정 사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금고약정과 관련된 집행권을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등 참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내용을 정함에 신중하여야 할 것인바, 이상의 사정을 동두천시조례안의 입안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개회...50개 안건 심의

- 도민 복리 증진 위한 조례 및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
- 조례안 38건, 예산안 1건, 동의안 6건, 건의안 4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충남도의회는 오는 8일(수)부터 17일(금)까지 10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조례 등 50개 안건을 심의한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8건, 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건, 동의안 6건, 건의안 4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5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특히, 이번 311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운영된다.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19년 5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